

15.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0년 4월 9일
- 발의의원 : 황순자, 강성환, 김동식, 김원규,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배지숙, 이시복, 이영애, 이태손, 전경원, 홍인표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4월 13일
- 상정일자 :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0년 4월 22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황순자 의원)

-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사업(안 제6조)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안 제7조)
 -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안 제9조 ~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충호)

□ 제정 취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국가 R&D예산으로 구축한 3,000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 중 대구시 관내 기관에서 소유한 장비는 2,900여개에 달하고 있음²³⁾.
- 이들 장비는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 분산되어 있고, 장비 보유현황·관리실태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유휴장비 증가, 활용도 저하, 장비 구입 및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중앙정부 차원의 장비관리 체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ZEUS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E-Tube시스템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들의 관리범위·대상 등이 상이하고 광범위하여 우리지역의 정확한 연구장비 파악과 공동활용에는 한계를 가짐.
- 이에, 지역기업·연구기관 등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단위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소재 연구장비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3) <https://www.zeus.go.kr/stat/custom>

□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의를 '대구광역시 내 공공(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정함.

○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실태조사(안 제5조)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의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사업(안 제6조)

공동활용장비의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안 제7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 부진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안 제9조 ~ 제10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계획수립·전담기관 지정·실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를 구성하되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함.

○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징수(안 제11조)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 각 기관별로 산재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전담기관 지정·운영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지역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장비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사 장비구입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연구자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참여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실태조사,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관리 시스템의 구축, 공동활용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으로 관련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비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요지	답변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참여에 강제성이 없는데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홍보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 이미 21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음. ○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기업들의 접근과 활용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